

82.10

소

장

원 고 황평우

피 고 대한민국

손 해 배 상 등 (기) 청 구 의 소

소송물가액 : 금 2,000,000 원정

참용인지액 : 금 10,000 원정

송 달 료 : 금 22,600 원정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황 평 우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종 구

손 해 배 상 등 (기) 청 구 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6. 6. 서울 40 가 7073 르망 승용차를 구입하여 강북구청에 이전등록을 한 후 위 강북구청에 등록세외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의 담당자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도록 독촉을 받는 바람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던 시민입니다.

소의 하길철, 정범택, 하경숙등 서울 노원구청 세무관리과 담당 공무원들로서 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17. 르망승용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강북구청 내에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에 취득세 금 18,3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갑제 호증 영수증 참조)

나 그럼에도 노원구청 세무관리과 하길철, 정범택, 하경숙등 담당 공무원들은 1997.7.7. 원고에게 원고에게 위 차량구입에 대해서 새로이 과태료를 포함하여 금 22,9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갑제 호증 고지서 참조)

이에 원고는 전화로 담당공무원에게 “분명히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왜 또 고지서를 발부하였느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당시 위 하길철은 자신이 담당이 아니라면서 정범택에게 전화를 넘겼고, 다시 정범택은 하경숙에게 전화를 넘기는 등 1시간30분동안 성실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오히려 고압적이고 신결질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납입날짜와 납부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심지어 등록된 날짜의 장부를 찾아보면 알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서울시 전산망에 올라가 있을테니까 전산망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 많느냐”고 역정을 낼뿐 전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결국 원고는 자신이 직접 영수증을 찾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상업은행 노원구 출장소에 확인해 보니까 같은 은행 상계동지점으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7.20.경 직접 상업은행 상계동지점으로 찾아가 사정을 한후 직접 서류창고에서 가져온 영수증 봉치를 2일간 뒤졌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상업은행 강북구청 출장소로 찾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담당자가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해서 하는 수 없이 강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은 4일만에 위 영수증을 찾아내서 원고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노원구청장에게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사과할 것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측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고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강북구청으로 미문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갑제 호증 내용증명우편, 갑제 호증 진정서 회신)

3. 피고의 과실.

소외 하길철, 정범택, 하경숙등은 우선 취득세를 다루는 공무원들로서 시민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장부상의 정리를 제대로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2중납부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에게 취득세를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2중으로 납부할 위험에 빠드린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착오로 인해 2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잘못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해서 만에 하나 착오가 있다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 공무원들은 전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납부하였는지 성실하게 조사해 보거나, 답변하지도 않고 “영수증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며 위압적인 자세로 대응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위, 감독의 책임이 있는자로서 위 공무원들의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4. 결론.

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원고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다가, 자신이 직접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과 강북구청 출장소를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찾아내느라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손해로써 일용 금 2,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갑제 1호증	고지서
갑제 2호증	영수증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소장부분 | 2통 |
| 1. 위임장 | 1통 |
| 1. 납부서 | 1통 |

1997. 10.

위 원 고 황 평 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4. 30. 판결선고	인
1998. 4. 30.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7가소 122799 손해배상(기)
 원 고 황 평 우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표자 구청장 김 용 채
 소송대리인 하 경 숙

변 론 종 결 1998.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외,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외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998. 4. 30.

판 사 최 윤 중 _____